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	
행정규칙명	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(개정) (금융위원회 고시) 소관부처 금융위원회
분류	1. ( ) 긴급을 요하는 경우 2. ( ○ )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3. ( )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4. ( )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. ( ○ ) 기타
□ 구체적 사유	
<ul> <li>동 규정안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산정원칙, 신용정보원 내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절차를 규정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확대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움</li> </ul>	
- 또한 '23년초부터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/F,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사안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안임	
□ 향후 일정(안)	
·'23.12.7.~'23.12.19. 규정변경예고 실시 ·'23.12.21. 금융위원회 안건소위 ·'23.12.27. 금융위원회 정례회의	
□ 규정변경예고 기간 : '23.12.7. ~ '23.12.19. (12일간)	
2023. 12. 4.	
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	
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상 록	